

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의자
제 89 호	제 29 차	1989. 12. 21	홍재 김 건

의안 「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」 개정

의결사항 「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의관계
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 7조

제의취지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취득 제한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한정된 자금의
용도외 유용 및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흐름을 방지하고자 전기와 같이
의결할 것을 제의함

< 참 고 사 항 >

제외관계 법규조항 발취

한국은행법 제7조

① (생 략)

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
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④ ~ ⑤ (생 략)

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취득 제한(지음 502-552, 1984.9.6)

정부의 "유흥서비스 및 여가산업 건전화 종합대책" (84.8.3 경제장관협의회 결정)의 시행과 관련하여 각 금융기관은 여신취급시 담보취득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「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」 제3조에서 정하는 여신금지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여신취급시 연건평의 1/2 이상이 「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」에서 정하고 있는 여신금지대상업종에 제공되는 건물 및 당해 대지는 담보로 취득하지 말 것.
2. 상가 건물 및 대지를 이미 담보로 취득한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관련 여신을 회수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것.

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정(안)

면 명	개 정 (안)	비 고
제 1조 ~ 제 3조 (생 략) (신 설)	제 1조 ~ 제 3조 (현 행 과 같 음) 제 3조의 2(담보취득의 제한) 금융기관은 여신취급시 연면적의 1/2 이상이 <별표> 제3호의 여신금지업종에 제공되는 건물 및 담해 대지환 담보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.	- 한국은행 중재종집행 금융통화운영 위원회 규정으로 전환
제 4조 ~ 제 12조 (생 략) (신 설)	제 4조 ~ 제 12조 (현 행 과 같 음) 부 칙 이 규정은 1989. 12. 22부터 시행한다.	